

가족복지에 관한 탐색적 고찰

- An Exploratory Study on Family Welfare -

李貞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1. 서 론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복지사회의 건설」이란 국정지표는 우리 모두에게 점차 확고·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복지사회의 출발지점이 가족에서부터 비롯된다고 간주될 때 가족복지가 차지하는 바중은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화 내지 動的化 형태로 일하여 개인, 가족, 사회환경 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Richard Feller가 현대인을 「우주선의 탑승객」으로까지 비유한 것은 물론 각 나라의 산업화 및 문화적 변동의 정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사되는 바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 혹은 한 시대의 생활양식으로부터 다른 시대의 그것으로 지향,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사회학자 Marion Levy는 현대사회를 비교적 더 근대화된 사회와 비교적 덜 근대화된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¹⁾ 경제학자 및 정책분석가로 스탠포드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고문으로 역임하고 있는 Garrett Sculera는 우리나라를 전자사회와 후자사회간의 과도기적 모델로 분석하고 있다.²⁾ 한마디로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二律의 불분명한 완충적인 사회구조하에서 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Levy의 두 다른 유형의 사회를 구분하는 주요 의존연구들 중의 하나로 우리는 가족기능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더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가족의 교육기능 내지 사회통제기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덜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가족이 교육 및 통제기능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³⁾ 또한 가족은 그 나름대로의 션텔리티(Syntality), 상호작용의 역동적 패턴, 개인성원적 및 집단

적 상태를 가지고 비단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정치·경제·문화 등의 다원적 복합체와 원활한 상호작용도 해야만 한다.

이와같이 현대가족의 기능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제도들과 상호적 혹은 상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긴장은 여타 사회제도들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 부문 혹은 사회사업측의 전문적 개입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⁴⁾고 하겠다.

「복지사회 구현」의 구심점이 되는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복지서비스와 가족복지정책이 2분화되기 보다는 양자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을 때 그 실효성·적절성·형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문 제 의 제 기

1960년대 이래 우리사회는 세계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이룩해 오면서 과도기의 긴장적 요소들을 가족에게 불가피하게 파급시키고 있다.

첫째, 우리사회의 기본이 되는 경제·사회적 부문에 있어서의 변화는 가족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생산자의 역할로부터 소비자의 역할로 전환시키고 있다. 가족은 비단 생산단위로부터 소비단위로 변화하는 것에限할 뿐 아니라 또한 소비의 성격에 있어서도 생활필수품의 형태로부터 점차 서비스의 형태로 대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족은 일차적으로 심리적 단위가 되며 부차적으로 경제적 단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쇼핑센타 및 각종 여가센타는 원초적 가정의 기능을 대행하는 제2의 가정이 되고 있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둘째, 소비의 형태와 관련하여 그 질과 양,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 또한 상대적으로 고조되고 있어서 가족은 이미 그 구성원들의 생존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개인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는 생활의 품위,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관계의 유지, 가족이라는 매체를 통한 개인의 성장 등을 내포하게 되었다. 가족은 점차 더욱 도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따라 가족해체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족해체는 통합·충성심·합의·가족단위적 기능의 붕괴 혹은 결속

혁의 파괴를 의미한다.⁵⁾ 가족해체의 일련의 증상적 문제들로는 이혼, 별거, 배우자 혹은 가족유기, 가족내의 폭행, 알콜 및 약물중독, 혼전출산, 혼인외동거, 모자가족, 부부불화,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적 갈등, 가출, 비행, 사생아, 기아, 기노 등의 다형상으로 나타난다.⁶⁾ 가족해체의 대표적 형태인 이혼은 성적 부적응, 불량한 주택환경, 가족의 경제적·의료적·교육적·종교적·리크리에이션 기능상의 약화, 여성의 취업, 조기의 자유결혼, 도덕력의 쇠퇴, 결혼관·태도·놀로지의 변동과 아노미의 작용,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개인의 주관적 요소 등, 인간관계론 내지 다원인론에 의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⁷⁾ William Kenkel의 연구중 주목할만한 것은 이혼남성의 상당수가 소득원이 없거나 저소득인 경우로 밝혀 진데 있다.⁸⁾ 결국 가족해체의 구심력이 되는 이혼의 원인을 어떤 결정적 의존변수에 의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필자의 생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혹은 빈곤은 가족해체의 잠재적인 소양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의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출산수의 억제 및 사망률에 대한 통계는 가족당 2.8명⁹⁾ 수준의 자녀수의 감소화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3.8%¹⁰⁾에 달하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초래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현대사회의 노인은 비단 사회적 노동력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내에서 조부모적 지위와 역할까지도 하락하게 되어 생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그 존재적 가치는 그만큼 더 잉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사회에서 미생산인구인 노인의 가치는 생산인구인 자녀세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 두 다른 세대가 상호호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限り 노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밖에 없다.¹¹⁾ 또한 고도의 산업화는 관료제화에 의하여 사회조직의 규모를 비대화시키는 반면 위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가족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 비록 단위로서의 가족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역할 및 자녀역할은 다소 사회조직 내지 사회제도에의 내화에 의한 복수적 역할로 다중적으로 상충되고 있어서 현대가족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넷째, 가족이 제2의 계도와의 계약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가족내에서 밀도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가족은 아동 및 노인보호를 그 원초적 기능으로부터 제2의

제도로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위임 또는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같은 가족구성원들의 분산확대는 우리에게 국가·가족을 可視케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우리는 이런 사회, 이런 가족에서 상호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¹²⁾

다섯째, 모든 산업사회에서 가장 부자되고 있는 양상을 둔의 하나는 자연적 세계를 인위적 세계로 대치시킴으로써¹³⁾ 가족에 바탕을 둔 인간성을 상실시키는데 있다. 사실 공업화는 자연적 세계를 인위적 세계로 대치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플라스틱이나 아스팔트의 환경은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되고 그리고 그 유지가 용이하지만 그것이 가족과 개인의 퍼서널리티에 미치는 역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인과 가족은 인위적 환경에 적응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진정한 퍼서널리티를 세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연을 치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공학적 욕구는 지방을 대도시화시키고 있으며 다시 대도시를 분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놀이와 일의 기능을 가족으로부터 점차 다원적 내지 원격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여섯째, 산업사회에서 생산의 3대요소중 토지와 자본의 결합은 권력과 제휴되어 「富益富」의 사회총화를 심화시키기 쉽다. 최근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1% 미만이 國富의 40%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이러한 부의 집중 현상은 노동을 능가하는 자본의 특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의 집중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가족의 복지가 임금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에 있다. 부의 집중과 적정임금은 양립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기업체는 임금 근로자 가족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보장하기보다는 그 자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노동에서 유래되는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은 자영자가 되지 못하는 한 기업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⁵⁾

일곱째,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교통과 통신망의 발달은 세계를 지구촌으로 축소시키고 있어서 정보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그 망을 통해서 보고되는 도처 사회의 격차현상이 가족들에게 역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각 채널의 지구촌에서 개인들은 어떤 합리적 평가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적응하기 용이한 가족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안정과 주체성 확립에 심각한 위기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III. 문제별 관점에서 본 가족의 유형

오늘날처럼 고부간의 갈등, 부부불화, 아동 및 청소년의 가출이 빈번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은 경제적 필요성이나 전통적 관례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창의적이고 건전하며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적응체 (self-adjustment)로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¹⁶⁾

그런 자율적 적응체가 내외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게 될 때 가족은 여러가지 형태로 문제성을 띠게 된다.

1. 문제의 범주

미국의 유명한 가족복지전문가들인 Frances Feldman과 Frances Sherz는 모든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4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¹⁷⁾ 그들의 명제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문제의 범주는 보편성을 염다는데 있다.

제1의 범주는 금전적 필요성이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은 심신 혹은 지적 제한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원을 갖지 못한다. 가족에 따라서는 그 구성원들 중에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없거나 실직 또는 저임금으로 인해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불충분한 경우이다. 빈곤의 유형을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으로 구분해 볼 때 선진국형은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인, 장애자와 같은 근로무능력자가 절대빈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형은 일시휴직자, 실직자와 같은 근로능력자가 절대빈곤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¹⁸⁾

제2의 범주는 가족구성원들중 1명 또는 그 이상의 수가 단기간 혹은 장기간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다. 아동이 위탁가정보호나 시설보호 혹은 성인이 의료보호를 요하거나 재소를 요하는 경우에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

장단기의 입원, 시설보호, 재소의 경우를 막론하고 특히 가족구성원들 중 취업자 혹은 보호인이 개입되게 될 때 외국의 예와 같은 단기생활보호체 내지 위탁보호제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는限 우리의 실정에서 생계위험 내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통로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제 3의 범주는 가족구성원들 중 1명 또는 그 이상의 수가 타인들과 적응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및 행동적 기준에서 그 규범을 이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개인(들)은 타인들과 의미있고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설혹 옥내외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일관성, 확실성,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상호 친밀성을 두려워하는 부부는 심지어 싸움을 통해서라도 정서적 거리감을 반드시 유지하고자 한다. 싸움을 통해서 조차 일루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부부의 경우 그 관계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여 부적응증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은 유년기의 불안에서 유래된다. 불안은 어린이와 부모와의 건전하지 못한 관계 및 부모간의 불행한 관계에서 발생된다.¹⁹⁾ 불안이나 신경성 요소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더 많으며 좀더 나아가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동에 수반될 수 있는 현상이다.

제 4의 범주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곤경 및 직업적 곤경에 해당된다. 예컨대 장애자, 정신병원으로부터의 퇴원자, 형집행정지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막론하고 사회로부터 낙인과 냉대를 받게 되며 따라서 취업의 기회는 극도로 제약을 받게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초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버지의 사회적 무기력 혹은 그로 인한 부성박탈은 자녀의 사회환경에서 동일시의 대상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년 철도법률 혹은 상습범들에 관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비행소년의 대다수가 부모중 특히 父로부터의 유기 경우가 많았으며 母와의 분리보다는 부모의 장기적 유기가 문제시 된다.²⁰⁾

문제의 출처가 어디에 있든간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아직 장애자, 정신질환자 및 범법자의 사후보호 과정에 사회로부터의 낙인이 제거되지 않는限 여러가지 미결된 문제들이 가정에 내재된다고 하겠다.

2. 가족의 유형

상기 문제의 법주에 의거하여 문제 가족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²¹⁾

가. 능력있는 가족

이 가족은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가지 생활과업에 대체로 합리적으로 성숙한 적응을 해온 가족이다. 이런 가족은 외부적 압력이 심각해졌다거나 가족의 통상적 대처능력이 방해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가족복지의 수혜대상이 되거나 혹은 가족복지기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다. 이런 가족의 구체적 문제들로는 생계부양자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사망, 부모의 급성질환, 가족의 경제적 및 정신적 지원을 고갈시키는 구성원들의 만성질환, 가족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실직, 노년기의 은퇴로 인한 소득원의 상실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이런 가족은 최소한의 복지수혜 혹은 사회사업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하여 능력 및 지원을 재동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수준에서 독립적인 사회기능을 회복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나. 혼란된 가족

이런 가족은 혼히 사회적, 심리적으로 분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대간에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형제자매들처럼 행동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에는 역할분화가 거의 혹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은 비행이나 알콜중독 같은 문제가 병발되기도 한다. 부모는 수시로 명령을 하고 다시 그 명령을 취하하기도 하는가 하면 연령에 맞지 않는 책임을 자녀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들과 자주 다투기도 한다. 이런 가족은 세대간 및 연령간의 경계선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부나 모가 배우자를 소외시키고 자녀와 하위집단(sub-group)을 이루거나 혹은 부자나 모녀간의 관계성이 회박하여 자녀에게 그들의 성에 적합한 역할모델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²²⁾ 이런 가족은 심각한 성격문제, 그리고 상호신뢰, 자체통제 및 주체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문제를 가졌다고 하겠다.

이 때 사회사업가의 주기능은 Eric Erikson의 적성설 활용을 통하여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기본적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해당단계

에 일치하는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 통합시키는데 있다.

다. 신경증적 가족

「신경증적」이란 정도문제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은 다양하다. 불안의 증후가 모든 영역의 사회적 기능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데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가족은 여러가지 과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한가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를 갖는다. 이런 문제는 가족생활 주기의 한 단계에서 잘 관리될 수 있다. 즉 현재 문제의 성격 및 심각성이 초기의 생활주기에서 미결되었던 문제가 새로운 생활주기에서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문제발생 당시의 생활주기에서 가족의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유익 또는 유해했는가에서 확인될 수 있다.

라. 정신증적 가족

정신증적 가족 또한 사회적 및 심리적 분열을 나타내지만 가족의 증상이 원초적이며 성격문제에 한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즉 양자가 가지는 문제의 배경은 비슷하나 혼란된 가족이 초기적 발달단계의 문제 혹은 고착때문에 인격문제를 가지는 데에 비하여 정신증적 가족 또한 초기의 경험과 관련되나 그 요인은 분명치 않다.

어떤 가족은 정신증환자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다른 가족은 정상적 가족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야릇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가족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증적 증상을 들어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에 적응력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사업가의 과업은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 죄책감, 적개심 등을 인식도록 하고 그런 감정을 경감시킬 수 있게 환기법 내지 여러 형태의 직접적 요법을 적용시키는데 있다.

IV. 가 족 복 지

이념으로서의 가족복지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비롯하여 불란서, 독일 및 스

칸디나비아에서 시발되었으며²³⁾ 실천으로써의 가족복지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내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발달되었다.

가족이라는 복합성 혹은 포괄성, 그리고 복지라는 고도의 추상성 내지 양면성 때문에 가족복지를 개념적으로 고정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가족복지의 개념은 문화적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체로써의 가족은 물론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가족구성원들 모두에게 행복을 도모토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²⁴⁾라고 잡정적 규정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에는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이 있다. 전자는 가족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써, 즉 가족이 전체사회와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보다 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 혹은 환경을 조성해가는 접근방법으로 정책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고 후자는 문제 혹은 장애로 고민하고 있는 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차원²⁵⁾에서 토의될 수 있다.

위의 접근방법들을 종합해 볼 때 양자는 어떤 수준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시각상의 차이 뿐 가족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 및 행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1. 가족정책적 접근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을 위해서 또는 가족에게 행하는 모든 것, 정부가 가족과 관련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한 프로그램들 및 제정책을 이행하는 상황, 비록 전적으로 일치되는 목표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가족을 위해서 프로그램들 및 제정책을 조치하는 상황, 혹은 정부의 조치 및 제정책이 가족을 위해서 특수하게 고안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초래되는 부수적 결과²⁶⁾로 규정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가족정책은 정부와 가족의 목표가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직접적 정책(explicit policies)과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가족에게 결과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간접적 정책(implicit policies)으로 설명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탁아보호, 아동복지, 가정상담, 가족계획, 소득유지, 조세혜택 및 주택정책과 같이 가족을 위해서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전자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은 분명히 정부정책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공

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결정, 무역법 및 관세법, 이민정책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정책들이 가족에게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수적 비직접적, 예상외적 결과는 후자의 정책에 해당된다.²⁷⁾ 이러한 가족정책의 결과들은 상호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가족정책은 공공정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목적 또는 목표 및 기준설정의 근원으로써 가족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 및 가족의 모든 활동에 미치는 제영향력과 관여된다.²⁸⁾

가족정책은 분명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처음 구라파에서 대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소득재분배책(예컨대 가족수당제, 생계보조비제, 소득세제)의 맥락으로 채택되었고 두번째는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적용되었다.²⁹⁾ 세번째로는 고아, 장애자, 노인, 빈민 및 무의무탁자 등 요부양자 내지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거액보호 혹은 대리보호를 행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³⁰⁾

좀더 최근에 와서 가족정책의 개념은 두가지 다른 맥락으로 쓰여지고 있다. 가족을 돋는다는 것이 아동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인식하는 전문가들은 가족정책의 개념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공정책을 고안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³¹⁾ 다른 일파에서는 여성, 특히 모성을 위한 사회정책 분야를 가족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분야는 직장을 가진 어머니 혹은 주부를 위한 사회보험금의 지급, 소득세의 감액, 사회보장상의 처우개선, 유통성있는 시간제 고용과 아동보호 목적의 턱아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의 수혜 필요성³²⁾ 등을 글자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David Gil은 후자와 관련해서 여성의 출산 및 아동양육은 다만 여성 자신의 개인적 기능 내지 가족적 기능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지속성과 생존력을 확신시켜 주는 만큼 또한 사회적 기능이며 사회적 투자가 되기도 한다는³³⁾ 전제하에서 사회는 그런 상황하의 모든 여성들에게 공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최저임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⁴⁾

현재 직접적 및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등이 있고 간접적인 가족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영국, 카나다, 이스라엘, 미국 등이 있다.

한편 가족정책을 하나의 분야로써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오스트리아, 독

일연방공화국,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을 들 수 있다.³⁵⁾ 가족정책을 하나의 분야로 간주하는 입장은 가족정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가족을 강화시킨다는데 초점을 두고 흔히 사회정책의 개념으로 병용시키고 있다.

Myrdal 이 현대사회에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정책을 어떤 정부라도 회피할 수 없다³⁶⁾ 고 본것은 매우 타당하다.

가족관련정책이 가족정책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상적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가족이 규정되어야 하고, 2) 가족생활주기³⁷⁾의 여러 단계에서 요청되는 개인적 및 사회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3)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적정액의 급여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동시에 4) 잔여적 급여 및 서비스를 제도적 차원으로 대치시키는것³⁸⁾ 이 요청된다.

결국 가족정책은 발전 중의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타정책들과 보충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고유의 가족의 의미를 파손시키지 않고 그 구조 및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산물로 발달을 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2. 가족복지서비스적 접근

가족복지서비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가족복지기관의 서비스활동³⁹⁾으로 특별히 가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복지기관의 목표는 가족내의 개인 클라이언트 및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하는데 있다.⁴⁰⁾

가족복지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짐약된다.

가. 가정상담

가정상담은 가족복지기관이 주로 부부불화, 부모와 자녀간 관계의 문제, 세대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에 관련하여 특별히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는 치료방법이다. 상담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단기 혹은 장기로 나누어지며 그 방법은 직접적 면접치료로 경우에 따라 개인, 집단, 가족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다.⁴¹⁾

나. 가정생활교육

최근 가족복지기관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그들의 상호간 애정 및 협동

심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⁴²⁾ 가정생활교육은 집단역학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가족 및 개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양양,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및 지역사회 생활의 정상적 형태 및 진장요소를 이해하도록 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상황적 위기를 예방 혹은 완화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교육방법은 집단 참여자들의 지적, 정서적 경험과 가족의 문제해결 및 치료를 병행시킨다.⁴³⁾

다. 가족옹호(family advocacy)

가족옹호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의 적용 및 액션의 사명을 가지고 가족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로서, 그 목표는 비단 혈족의 공적 및 민간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의 향상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롭고 변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다.⁴⁴⁾ 가족옹호는 또한 지역사회내의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지체 및 인권의 남용과 같은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적 액션을 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⁴⁵⁾ 애드보커시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인종차별, 인간차별, 빈곤, 불의,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으로부터 파격적인 역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의 가족들, 근린들 및 지역사회에 주어져야만 한다.⁴⁶⁾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 전략으로 여러 가족서비스 기관들이 협력하여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경제사회적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대신하여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또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상호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⁴⁷⁾

이와같이 오늘날의 가족서비스기관들은 특수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응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 이미 언급한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 가족옹호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모두는 인간사회의 기본적 제도가 되는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체계보다는 오히려 체계내의 사람들을 돋기 위한 가족서비스라는 공통분모적 사명감에 의거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모든 가족서비스기관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해서 개인의 인권 및 가족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가족관련 서비스

가족복지기관들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현행 서비스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서비스들 중에는 1) 가정부 서비스, 2) 빅 브라더-빅 씨스터 (big brother-big sister) 서비스, 3) 법률상담, 4) 우애방문, 5) 여행자 보조, 6) 학력천아동,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보호, 7) 집단가정 (group home) 서비스, 8) 재정상담, 9) 캠프, 10) 청소년·노인·장애인을 위한 상황적 보호프로그램, 11) 빈민을 위한 치과진료 및 보건유지프로그램, 12) 튜토링 (tutoring), 13) 직업안내, 14) 학령천아동의 인지기술과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프로그램, 15) 공적부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의 특수한 욕구 및 공적부조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빈곤한 가족의 경제적 원조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위탁보호, 일양, 한계인구-소수자집단, 빈민, 노인, 알콜중독자, 미혼모와 같은 문제집단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⁴⁹⁾

이상 가족관련서비스들은 다양한 접근 및 치료방법,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의 결합 형태로 행해지며 따라서 여러 출처의 전달체계에 의거하고 있다.

마. 전문지역

가족복지기관들은 미래 가족복지분야에 투입될 전공 학부생들 및 대학원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제 가정상담이나 기관의 기능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전문교육에의 참여는 물론 그런 방법으로 더욱 자체의 전문화를 제고시키고 있다.

바. 조사연구

가족복지기관들은 조사연구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타기관들과 교환하는 전문적 책임을 높이고 있다.⁵⁰⁾

사. 가족치료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개별사회사업, 가족치료 (family therapy), 치료 (treatment) 및 상담 등의 방법을 접종하는 다양한 모델의 가족치료가 가족복지기관 및 인접 셋팅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치료에는 1) 가족내의 상호작용패턴에 초

점을 두는 conjoint family therapy, 혹은에 따르면 conjoint psychotherapy, Murray Bowen에 의하면 family group therapy, 2) 가족체계에 초점을 두는 multiple impact therapy, 3) 치료가 핵가족으로부터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간주되면 이웃, 친구들, 의미있는 타인들에게까지 확대시키는 network therapy, 그리고 4) 타가족들을 가족치료에 개입시킴으로써 자체 가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multiple family therapy의 네 형태가 있다.⁵¹⁾

이러한 가족치료는 Hartmann과 Erikson의 자아심리학, Sullivan의 대인관계론, Jackson, Haley, Satir의 코뮤니케이션이론, Lewin의場이론에서 유래된 소집단이론에 크게 의거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가족치료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널리 익혀진 Virginia Satir, Jay Haley, Salvador Minuchin, Murry Bowen, 故 Nathan Ackerman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 혼전혼후상담

예방성과 치료성을 떤 이 서비스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혼전혼후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행복한 결혼에 대비해 하고 만족한 부부관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일종의 치료적 상담이다.

우리는 상기 미국의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 내지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하에서 적절성, 타당성, 형평성, 유효성 특히 실현가능성에 유의하여 우리의 기존 가족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V. 우리나라 가족복지상황과 그 전망

1. 우리나라 가족복지 상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 중심의 사회를 유지해 온 나라들 중의 한 예이다. 이런 우리의 가족주의를 동요시킨 역사적 사건으로는 서구의 이데올로기 및 그 문물을 동시적으로 유입하게 된 8.15해방, 우리 전래의 가족상태에 일대 혼란을 초래시킨 6.25동란, 그리고 1960년대 초반以来 현재까지 급진행되고 있는 공업화 시책을 들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파도기적인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을 동시에 초래시켜 비교적 안정을 유지

해 오던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부와 빈의 상반적 혹은 양면적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모순된 현실을 조성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동적 산업사회에서 주체성 위기의 가족의 기능을 창의적으로 강화, 보완, 향상시켜 줄수 있는 강력한 사회제도의 개입이 없는 한, 물론 가족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하는 미결된 문제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더 이상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것 좋은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6.25동란 직후 한국주재 외국민간단체들로부터 시작된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주로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사생아, 미아, 기아, 부랑아, 가족이탈아동들을 중심으로 하여 시설보호와 주원자 결연에 의한 12세 아동의 교육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었었다. 이런 희망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옹호 시위하고 성인의 근로의욕 유지 그리고 우리의 國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소원리의 전략에 입각한 미봉적 혼탁급여 및 혼금급여, 그리고 그 이면의 서구의 이데올로기 및 실용주의의 반영에 불과했고 진정한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은정적 의미에서 조차 가족복지라는 등한시 되었다. 이 때는 고용주나 피고용자를 막론하고 비전문가에 의하여 원조프로그램이 이행되었었고 따라서 시설아동 혹은 불우아동 중심의 자선적 구호사업의 성격을 뺏어나지 못했다.

1960년대 초 신생공업국으로 출발한 우리나라는 모든 가족들에게 간접적인 와급력을 미치는 경제개발정책과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개발정책을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전자가 후자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데 우리 가족의 기본적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

사회개발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된다. 현재 가장 많은 인구층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관계법으로는 공무원연금법(1960),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973), 의료보험법(1976)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료보험법(1978)을 들 수 있는데 그 수혜규모는 1천 3백 3십 5만명으로 1980년 현재 총인구의 35%⁵²⁾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험비의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출대비율은 67.9%⁵³⁾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관계법은 수급자격요건을 우선시킴으로써 고소득층일수록 그만큼 높은 사회보장비를 지

급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시켜 비스마르크형 제도의 약점을 저소득 가족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격이 되고 있다.

공적부조제도에는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구호법 및 국가유공자 등 특별보호법(1962), 자활지도사업특별조치법(1965), 의료보호사업(1977)이 있다. 공적부조사업⁵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의 수혜인구는 1980년 현재 전체인구의 4%⁵⁵⁾로 사회보장비에 대한 공적부조비대비 30.3%⁵⁶⁾ 중에서 불과 7.1%⁵⁷⁾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원호사업비대비 15.8%와⁵⁸⁾ 비교해 볼 때 공적부조에 있어서 까지도 수평적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생보가족의 빈곤은 타제도들로부터의 보완책이 뒷받침되지 않는限 그 해소가 어렵다고 하겠다. 이미 토의한 바와 같이 빈곤은 가족해체의 잠재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사회복지사업법(1970),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그리고 노인복지법(1981)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관련법은 전적으로 시설위주이고 그리고 주로 아동중심적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특징지워 진다. 1979년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시설에 수용된 인원수는 총 8만9천3백73명에 이르며 그중 아동의 수는 84%에 해당되고 노인, 심신장애자, 요훈련부녀자, 요보호모자 등 성인의 수는 16%⁵⁹⁾에 이른다. 재정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는 사회보장비의 1.8%⁶⁰⁾에 해당되는 액수가 할당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설중심의 영세성 구호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은 단순히 보족적 원칙에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역할모델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귀가 혹은 가족에 결연시키는 대신 시설에 사회화시킴으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의 가족관을 혼미시키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결국 1960년대는 가족에게 간접적 파급력을 가지는 경제개발정책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개발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1984년 현금에 이르기까지 전자의 정책은 강제성을 떠고 일관성있게 그리고 광복할만하게 발전해 온데 비하여 후자의 관련정책은 필요에 따라 임의성을 떠고 개인단위적, 단편적, 산발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전자는 후자의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후자는 전자의 필요조건으

로까지 경시되는 제도간의 비보완성에 우리 가족의 기본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제도내외적으로 증차화되어 있어서 제도 자체가 약체일 뿐 아니라 제도내에서 수직적 및 수평적 재분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득의 재분배 혹은 소득이전이라는 소기의 기능에 아직은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사회보장비를 받게되는 비스마르크형 복지의 약점 현상으로 오늘날 우리의 영세가족은 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 빈곤은 비단 물질의 절대적 및 상대적 절여에限하지 않고 사회적 힘이나 협상수단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빈곤가족은 빈곤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양상의 문제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복지사회의 구현」을 가족주의의 미풍양속에 부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설중심성 및 아동위주성은 비단 국정지표에 상충될 뿐 아니라 복지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족복지와도 양립될 수 없다.

한편 민간수준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족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미흡,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의 비활성화, 점차 감소될 의원의 동결화, 자체의 기금난으로 인해서 가족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1,500여개소의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으나 그중 1,128개소가 시설법인체들이고 나머지 단체 중에도 가족복지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사회복지법인체들은 개인단위의 복지 보다도 가족단위의 복지의 필요성을 더 철감하면서도 필요에 접근하기 보다는 우선 기관의 생존을 위한 임양사업을 비롯하여 현상유지적 후원사업,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의 새마을유아원 사업, 청소년, 노인, 심신장애인, 유태인여성을 위한 상황적 보호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또한 우리의 영원일진데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가족정책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개정, 재정비의 과정에서부터 관련서비스의 전달에 이르기까지 인력 및 행정체계의 전폭적 전문화를 과감히 시도할 필요가 있고 정부기구와 민간조직체

간에 상호보완적인 분업형태의 기반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기점에 있다.

2. 우리나라 가족복지에 관한 탐색

공적이든 민간이든 간에 가족복지주체는 가족의 변화하고 있는 욕구 및 새로운 욕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상호 보완적이 될 것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문제가 제시된다.

- (1) 정부 및 민간가족복지주체 간의 적합한 분업의 형태는 무엇인가?
- (2) 민간가족복지주체 간의 적합한 분업의 형태는 무엇인가?
- (3)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양측이 가족에 관하여 어떤 개념,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가족에 관련하여 주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제 1의 문제와 관련하여 간결한 안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업의 형태는 공적 기반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필요성 및 가족의 자치력과 관련하여 정부는 가족정책 및 공적부조의 범위 내지 그 수준을 향상시켜가되 그 서비스를 정립, 관리, 할당하는 과정에 민간가족복지기관과의 분업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 2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과다조직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가족복지서비스의 충복, 상호 빈약한 계획과 불충분한 의사소통 및 가족의 욕구에 비례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경향이 있어서 기관간의 서비스의 조종화와 종합화 대책이 요구된다. 제 3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도기의 우리는 가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재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데 우리사회에서 이혼은 불가피한 정상적 반응인가, 아니면 병리적인 반응인가? 산업사회에서 아동교육, 노인보호 및 가족의 사회화를 사회제도가 점차 이양해 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 그 기능을 전담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사회참여는 가족에 기능적인가, 아니면 역기능적인가? 어떤 가족형태가 우리사회에 최적합한 것인가? 가족의 복합적 형태는 가능하며 바람직한가? 가족정책,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가족관련서비스는 이러한 일련의 기본적 이슈에 대한 태안으로부터 유래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또한 사회와 가족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점차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 가족정책의 과제

산업화의 추세로 우리나라의 가족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족 내적 문제가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 외적 문제로 파급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 가족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단편적인 가족정책으로는 시설보호형태의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자녀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계획,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정책의 관련시책이 가족정책의 공통목표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약화시킴으로써 가족해체 내지는 가족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해 주고 있다. 가족정책의 통합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각도에 의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행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은 주로 인위적이고 영세적인 시설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족을 결속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해체시키는 원인 및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기본방향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조장방침과 경로효친사상시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증후적으로 각종 청소년 비행, 부적응, 세대간 갈등 및 인간소외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내의 요보호자를 위한 대책으로써 아동수당제와 노령수당제가 바람직하다.

결국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의 형태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 선가정보호, 나) 사회적 보호하의 가정보호, 다) 가정적 보호가 어려운 경우나 가정외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시설보호, 라) 시설수용형 보다는 통원형, 그리고 마) 가정적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시설의 내실화⁶¹⁾로 간주된다.

2)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써의 사회보장의 소득이전적 기능에 의하여 가족간 소득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사회보장은 수직적 및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족해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저 소득 혹은 빈곤해소책으로 역소득세법(a negative income tax)을 고안, 적용 시켜 일정선 미달의 모든 저소득자를 혹은 저소득가족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⁶²⁾

4) 현행 가족계획사업은 출생비율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는 의미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나 인구의 자질향상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인구에 대한 사회적 투자 내지 적어도 의무교육의 수준을 상향조정할 것이 요청된다.

5) 남녀평등책으로서의 모성수당, 모성의 유급휴가, 아동의 질병으로 어머니가 임금근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양육수당 및 모자보건법의 활성화는 비단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의 일환이 될 뿐 아니라 인구정책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고 간주된다.

(6)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녀복지사업은 시설보호형 태로부터 가정적 분위기의 비시설보호형태로 전환됨이 요망된다.

한 마디로 인간에게 가족을 능가하는 다른 사회제도들은 없다는 의미에서 가족정책은 모든 공공정책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가족정책 혹은 가족관련정책들은 선별주의(selectivism)로부터 보편주의(universalism)로, 그리고 잔여적(residual) 차원에서부터 제도적(institutional) 차원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정지표에 융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가족복지프로그램 모델에 관한 탐색

1) 가족문제 조사연구접근적 프로그램 모델은 제한된 수의 가족들에게 제한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를 전달,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동태를 주의깊게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서비스는 실험적 성격을 띠며 조사연구와 병합된 것으로 이 모델은 제도화 이전에 우선 사실을 수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모델은 아동보호, 거택보호 혹은 가정상담은 공적 주체하에 시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제하고 민간기관은 그 이전의 단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하여 그 결과와 가족의 변화하고 있는 적응형태를 연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2) 지역사회조직에 의한 주민의 협동프로그램 모델은 지역사회주민들 스스로가 협동하여 자원을 동원도록 하게 하는 가족들 내지 균린단위의 지역사회 조직활동의 형태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모델은 가족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사회가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전문적 활동을 강조한다.

3) 가족옹호프로그램 모델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간의 복합성을 인식하고 가족들을 대신하여 민간가족복지기관들이 대변적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델의 기능은 타제도들, 예컨대 학교, 교회, 정당, 기업체 등이 가족의 환경 및 생활양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다. 이 모델을 적용하는 민간가족기관은 고도로 정치적이며 가족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 로비활동을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이미지는 치료자가 아닌 가족의 권익옹호자이며 직접적 서비스 전달자가 아닌 조직자의 성격을 띠는데 있다.

4) 종합적 서비스 프로그램 모델은 민간 가족기관이 이미 채택된 공적, 제도적, 보편적 가족복지부문의 서비스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관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고의 시발적 고안 내지 잠정적 틀에 불과하며, 이것을 개념적, 이론적, 실천적으로 창의성 있게 좀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각종 상담, 교육, 가족치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위에서 이미 토의한 바와 같이 금후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급격한 산업화에 수반되는 제반 사회제도들간의 불균형적 변화와 가족생태의 변이적 적용 내지 부적응과 관련되는 과도기적 노동소외와 그로 인한 인간소외로 집약된다. 가족복지라는 노동소외 및 인간소외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남기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조직의 비대화 현상은 일터와 놀이터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으며 규모나 기능면에서 축소화된 가족의 제2제도의 불가피한 제약은 특히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시설보호의 수요를 급증시키는 것에 의하여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부의 집중현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가족해체의 현상까지도 초래하고 있어서 원초적인 가족집단내에서의 인간관계까지도 혼란적, 신경증적, 정신증적으로 난립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가족의 기능을 거대한 조직에 분산시킬 것이 필연적으로 강요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정부 및 민간가족복지기관들은 가족의 생명력 및 사회의 통합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문간, 제도간의 상충성을 배제하고 가족의 욕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복지라는 잔여적 관점으로부터 제도적 관점⁶³⁾으로 점차 그 기능을 확대시켜 갈 것이 요망된다.

가족복지가 실효성을 가지자면 그 시대, 그 사회의 맥락에 일치하는 사회정책 및 위에서 시범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은 다양하고 신축성있는 가족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그 전초작업으로 사회사업(사회복지) 대학은 "가족복지"라는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고 가족복지를 다만 치료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전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하나의 현안문제로

다를 수 있는 내용의 활성화를 필요로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족복지를 위한 부문간 및 관련제도 내외적인 분업과 그리고 가족복지에 개입되는 인력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건전한 가족은 건전한 개인과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가족과 건전한 개인을 만든다.

(註)

1. Refer to Marion J. Levy, Jr., *Modernization and the Structure of Societie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2. Refer to Garrett N. Scalera, "The Korean Economy in the 1980's: A model to Transition to Economic Maturity," *Time* (May 21, 1979).
3. Marion J. Levy, *op. cit.*
4. Werner W. Boehm, "Social Work Education: Issues and Problems in the Light of Recent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12, Winter 1976), p.21.
5. 김 영모, 「현대사회문제론」(서울: 한국사회정책연구소, 1981), p.132 참조.
6. See Shirley L. Zimmerman, "The Family: Building Block or Anachronism," *Social Case Work*, Vol. 61, No.4 (April 1980), p.196. See also 김 반두, 「현대사회복지총론」(서울: 홍익제, 1982), p.286.
7. See William M. Kephart, *The Family, Society, and the Individual*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1), pp. 620-625.
8. Refer to William F. Kenkel, *The Family in Perspectiv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60), p.294.
9. 고 갑석, "인구현황과 제문제: 사회적 측면," 「대학생 인구문제 세미나」(1981), p.5 참조. 인구학자들은 가족당 2.11명의 출산수를 제로인구성장을 볼.
10. *Ibid.*, p.7.
11. 이 정숙,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천과 가족복지의 정책적 고찰," 「사회복지」(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봄호, 1982), p.14.
12. See Vanco Packard, *A Nation of Strangers* (New York: David McKay, 1972).
13. Thomas Walz and Others, "Environmental Design," *Social Work*, Vol. 19 (January 1974), pp.38-46.
14. Jack Newfield and Jeff Greenfield, *A Populist Manifesto* (New York: Praeger, 1972), p.6.

15. Refer to Louis Kelso and Patricia Hatter, *How to Turn Eighty Million Workers into Capitalists on Borrowed Money* (New York : Random House, 1967).
16. See Earl Rarb, *Major Social Problems*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3), p.428.
17. Frances L. Feldman and Frances H. Scherz, *Family Social Welfare : Helping Troubled Families* (New York : Atherton Press, 1968), pp.44-47.
18. 박 충기 외4인,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1981), pp.332~333.
19. 한 등세, 「정신과학」(서울: 일조각, 1976), p.98 참조.
20. 上揭書, p.99 참조.
21. Frances L. Feldman and Frances H. Scherz, *op.cit.*, pp.47 - 51.
22. 엄 예선,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술: 사회사업적 측면," 「가족복지센미나」(서울특별시, 1980), p.31 참조.
23. See Carlton E. Munson, ed., *Social Work with Familie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The Free Press, 1980), p.62.
24. Frances L. Feldman and Frances H. Scherz, *op.cit.*, p.59.
25. 김 민수, 前揭書, p.294 참조.
26. Carlton E. Munson, ed., *op. cit.*, p.61.
27. Sheila B. Kamerman and Alfred J. Kahn, ed., *Family Policy :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3.
28. *loc. cit.*.
29. *Ibid.*, p.4.
30. *Ibid.*, pp. 4 - 5.
31. *Ibid.*, p. 5.
32. *loc. cit.*.
33. David G. Gil, *Unravelling Social Policy : Theory Analysis, and Political Action towards Social Equality* (Massachusetts :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1973), p.59.
34. For further detail, see *ibid* , pp. 59 ~ 135.
35. For further detail, see Carton E. Munson, ed., *op. cit.*, pp.17 - 475.
36. Sheila B. Kamerman and Alfred J. Kahn, "Explorations in Family Policy," *Social Work, Journal of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Volume 21, Number 3 (May 1976), p.183.
37. 가족생활주기 : 가족이 거쳐가는 성장단계로 1) 결혼, 2) 결혼초기, 3) 첫

자녀의 출생, 4) 다음 자녀(들)의 출생, 5) 첫 자녀의 입학, 6) 자녀(들)의 사춘기, 7) 자녀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시기, 8) 자녀의 분가, 9) 조부모 시기, 10) 배우자의 은퇴시기, 11) 배우자와의 사별시기로 분류해 봄.

38. John M. Romanyshyn, *Social Welfare : Charity to Justice* (New York : Random House, Inc., 1971), p.343.

39. Walter 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68), p.357.

40. *Ibid.*, p.354.

41. Salvatore Ambrosino, "Family Services : Family Service Agencie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ume I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77), p.430.

42. Walter A. Friedlander, *op.cit.*, p.354.

43. National Commission o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Life Programs, Principles, Plans, Procedures," *Family Coordinator*, Volume 17 (July 1968), p.211.

44. Ellen Manser, ed., *Family Advocacy : A Manual for Action*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73), p.3.

45. *Loc. cit.*

46. *Ibid.*, pp.3-4.

47. Salvatore Ambronosino, *op.cit.*, p.431.

48. Ellen Manser, ed., *op. cit.*, p.4. For detail, read further to the end of the book.

49. Salvatore Ambronosino, *op. cit.*

50. See *ibid.*, pp.431-432.

51. Refer to Vincent D. Foley,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rapy* (New York : Grune & Stratton, 1974), pp.2-4.

52. 박 종기 외, 前揭書, pp.57-58에 의거하여 산출한 비율임.

53. 上揭書, p.62.

54. 공적부조사업은 생활보호사업 외에 영세민 취로사업, 이재민 구호사업, 군경원호사업으로 분류됨.

55. 박 종기 외, 上揭書, p.59.

56. 上揭書, p.62.

57. 上揭書.

58. 上揭書.

59. 上揭書, p.61.

60. 上揭書, p.62.

61. 박 태룡, "아동복지사업의 기본방향," 「국가발전과 아동 및 가정복지」 (대한사회복지회, 1982), p.39 참조.

62. 이 정숙, 上揭論文, pp.19-20.

63. See John M. Romanyshyn, *op. cit.*, pp. 34 - 37.